

의안번호	2212786
의 퇴 인	박선원의원
회 답 일	2025.11.21.
추계번호	25D4868

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 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7조(기부 및 양여 재산 평가)	제6조제1항에 따른 기부재산 가액이 양여될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그 차액을 국가가 지원하여야 함(제1항) 사업시행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양여재산 가액이 기부재산 가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된 금액은 지원사업에 사용하여야 함. 이 경우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토지 및 시설은 대체시설 가액산정 시 포함하여야 함(제2항)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설치된 대체시설에 대하여 「국유재산법」 제55조에도 불구하고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야 함(제3항) 기부재산의 가액은 토지 등 매입과 대체시설의 공사비, 부대비, 자본비용 등 실제 투입된 모든 금액을 고려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되, 사업시행자가 실제 투입한 비용 이상이어야 하며 양여재산의 가액은 종전부지 활용사업 계획이 반영되지 아니한 도시·군관리계획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결정되어 고시된 도시·군관리계획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함(제5항) 제5항에 따른 양여재산의 감정평가 대상은 토지, 건물, 공작물, 임목, 축, 장비 등 종전부지에 현존하는 물건이며, 그 중 사업시행자가 사용하지 아니하는 물건은 양여재산 평가 시 제외함(제6항)	의무규정
2	안 제9조(토양오염 처리의 특례)	사업시행자는 종전부지가 「토양환경보전법」에 따른 토양오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를 시행하여야 하고, 그 사실을 즉시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(제1항) 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결과 토양오염이 발견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토양오염을 정화하여야 하며, 발생한 실투입비용은 국방부장관이 국방예산으로 지급함(제2항)	의무규정
3	안 제13조(조세 감면 및 부담금 등의 면제)	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사업, 지원사업 및 종전부지 활용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 안에 회사를 설립하는 자, 공장을 이전하여 오는 자 등에게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함(제1항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사업, 지원사업 및 종전부지 활용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에 대한 「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개발부담금, 「농지법」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, 「산지관리법」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,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·사용료, 「국유재산법」에 따른 국유재산 점용료·사용료,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면제함(제2항) 이전사업, 지원사업, 종전부지 활용사업을 추진할 때 관계 법률에 따	의무규정

연번	조·항 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른 인가·허가등을 받은 경우 인가·허가등의 사유로 부과하는 수수료 및 사용료는 면제함(제3항)	
4	안 제14조 (이전주변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보조율)	국가는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해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함	의무규정
5	안 제20조 (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·개발)	시·도지사는 종전부지 및 이전주변지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을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(제1항)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은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 제9조, 제13조, 제14조, 제14조의2, 제14조의3 및 제17조를 준용함(제3항)	의무규정
6	안 제23조 (교육재정지원의 특례)	교육부장관은 종전부지 및 이전주변지역의 개발과 관련한 교육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에 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7	안 제24조 (사회기반시설 지원)	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전부지 및 이전주변지역 안에 교통시설·전력 및 상수도시설 등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2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이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(제1항)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「도로법」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종전부지 및 이전주변지역 내 도로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함(제2항)	의무규정
8	안 제25조 (교육·문화·관광시설에 대한 지원)	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전 부지 및 이전주변지역에 각급 학교, 문예회관·도서관·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, 관광·숙박·위락시설 및 체육시설(이하 “교육·문화·관광시설”이라 한다)이 적절히 설치·유치될 수 있도록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근거규정
1	안 제7조(기부 및 양여재산 평가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9조(토양오염 처리의 특례)	
3	안 제13조(조세 감면 및 부담금 등의 면제)	
4	안 제14조(이전주변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보조율)	
5	안 제20조(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·개발)	
6	안 제23조(교육재정지원의 특례)	
7	안 제24조(사회기반시설 지원)	
8	안 제25조(교육·문화·관광시설에 대한 지원)	

2. 상세사유

가. 기부 및 양여재산 평가(안 제7조)

- 현행법령¹⁾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의 개발을 위해 사업시행자(지방자치단체 등)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통합·이전 부지와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국방부가 기존 부지를 양여하는 기부 대 양여 사업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음
 - 기부대양여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이전 소요재원을 조달하고, 대상부지를 선정해 대체시설을 건설하여 기부 후에 이전 군용지를 받는 절차로 추진됨
- 개정안은 현행 자산가치 평가방식을 사업시행자(지자체 등)에게 유리하게 개정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통합·이전과 지역발전 추진을 지

1) 기부대양여 사업은 「국유재산법」(제13조 및 제55조)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, 「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(제12조), 「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」, 기재부 「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지침」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음

원하는 내용으로, 추가재정소요 발생

- 현행규정에 따를 경우 기부 대 양여 사업 시,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의 기부재산 가액이 양여재산의 가액보다 커야 하지만, 제정안은 기부재산 가액이 양여재산보다 큰 경우 차액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
 - 반대로, 기부재산 가액보다 양여재산 가액이 큰 경우, 현행 규정은 양여재산을 기부재산 범위 내로 조정하고 잔여 재산은 분할하여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제정안은 초과분은 이전지역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
- 현행규정은 양여부지의 감정평가 시 지자체의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, 제정안은 지자체의 사업계획 반영 전 상태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종전부지의 정착물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자가 사용하지 않을 경우, 양여재산 평가 시 제외하도록 하는 등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하도록 규정

[표 1] 기부 대 양여 사업방식의 현행규정과 제정안의 주요 차이 비교

제정안 조항	현행 규정	제정안
제7조 제1항	기부≥양여인 경우 이전사업 추진 가능하며 별도 국비 투자는 없음	기부>양여 시, 차액을 국가가 지원하여야 함
제7조 제2·3항	기부<양여인 경우 양여재산을 기부재산 범위 내로 조정하고 잔여 재산은 분할하여 매각	기부<양여 시, 초과분은 이전지역 지원사업 을 실시하고 기부재산에 포함하여야 함
제7조 제5항	기부재산은 대체시설의 원가를 고려한 전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로 그 가액을 평가 함(실제 지출액과 감정평가액은 다를 수 있 음)	기부재산은 자본비용 등을 포함하여 실제 투 입한 비용 이상으로 감정평가하여야 함
제7조 제5항	지자체 사업계획(도시·군관리계획 변경 등) 을 반영하여 양여부지 감정평가	지자체 사업계획(도시·군관리계획 변경 등) 반영 전 상태로 양여부지 감정평가
제7조 제6항	종전부지의 정착물(건물, 공작물 등)에 대해 서도 양여재산 평가 시 포함	사업시행자가 사용하지 아니할 물건은 양여 재산 평가 시 제외함
제8조	불가피하게 사업구역의 분할이 필요한 경우, 기존 합의각서는 파기하고 작전성 검토, 사업 타당성 평가를 거쳐 합의각서를 분리하여 다 시 체결함	필요 시 사업구역을 분할할 수 있으며, 이전 완료시 지체없이 기부재산 가액 범위에서 해 당 구역을 양여하여야 함
제9조 제2항	양여재산 감정평가 시 양여부지 토양오염정 화비용을 고려하여 평가(감액)	양여부지 토양오염정화비용을 국방예산으로 지급함

자료: 국방부

□ 제정안에 따라 기부 대 양여사업을 시행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 발생이

예상되나, 현재 기부 대 양여 사업은 사업시행자(지방자치단체 등)가 건의하여 이전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사업대상을 특정하기 어렵고, 이전을 건의하는 대상부대의 규모도 다양하여, 현 시점에서 제정안에 따라 추진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이전사업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

나. 토양오염처리 특례, 조세 및 부담금 감면, 이전주변지역 지원 등(안 제9조, 안 제13조, 안 제14조, 안 제20조, 안 제23조, 안 제25조)

- 제정안에 따라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사업 수행 시, 토양오염처리 비용의 예산 지원(안 제9조), 사업 시행과정에서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및 면제(안 제13조), 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 인상 지원(안 제14조), 외국인투자지역 지정·개발에 따른 고용보조금 등 지원(안 제20조),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 지원(안 제23조), 사회기반시설 건설 비용 지원(안 제24조), 교육·문화·관광시설 유치 비용 지원(안 제25조) 등을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 발생 가능
- 다만,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사업이 사업시행자(지방자치단체 등)의 건의에 의해 시작되기 때문에 사업대상과 이전을 건의하는 대상 부대의 규모 등을 특정하기 어렵고 이전 대상 부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내용을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

Ⅲ. 부대의견

- 해당사항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전수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전수연	02-6788-4667	syjeon@assembly.go.kr